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5348712 판결 [구상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그리심

변론 종결2015. 4. 7.

판결 선고2015. 4.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66,540원과 그 중 46,205,666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68,457,7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각 2014. 12. 2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그리심과 피고 B 사이에 2014. 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그리심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접수 제344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09. 9. 21.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2014. 8. 12. 46,742,082원, 2014. 8. 29. 68,457,700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등 합계 114,666,540원과 그 중 46,205,666원 및 68,457,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등 합계 114,666,540원과 그 중 46,205,66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8. 12.부터, 68,457,7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8.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12. 24.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그리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기초사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는 경우에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시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9.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한편 피고 A이 위 대출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피고 A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원,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원리금을 변제해오다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증조건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0. 9. 7. 당초의 보증금액 6,000만 원을 5,130만 원으로, 당초의 보증기한 2010. 9. 20.을 2010. 12. 20.로 각 변경한 이래 보증금액을 한 차례 더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4,617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네 차례 더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4. 12. 19.로 각 변경하였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0. 9. 7.에 당초의 보증금액 9,000만 원을 7,650만 원으로, 당초의 보증기한 2010. 9. 20.을 2010. 12. 20.로 각 변경한 이래 보증금액을 한 차례 더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6,8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네 차례 더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4. 12. 19.로 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5. 20. 국민은행에 대하여, 2014. 6. 6.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14. 8. 12. 중소기업은행에게 46,742,082원, 2014. 8. 29. 국민은행에게 68,457,7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그리섬(이하 '피고 그리섬'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 건물 502호 및 510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3. 12. 31. 기준으로 수년간 연체된 84,955,849원의 차임채무가 발생하여 있었고, 피고 그리섬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5.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4431호로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 여부

이 사건 근저당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2009. 9. 2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피고 B이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의 변제기 연장 끝에 2014. 5.경과 2014. 6.경 원리금 연체 및 2014. 8.경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피고 그리섬에 대한 84,955,849원의 연체차임 채무와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A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여러 차례 연장해 오다가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다.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1억 1,47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 피고 그리심에 대한 84,955,849원의 연체차임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 그리심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0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재산상황에 변동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모두 채무초과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여부

1)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명인 피고 그리심에게 이 사건 근저당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그리심은 이 사건 근저당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채무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그리심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된 피고 B이 수년간에 걸쳐 피고 그리심에 대하여 84,955,849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1차 변론기일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그리쉽에게 은행대출채무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피고 그리쉽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연체차임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그리쉽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대균

별지